

문서번호	생활보장과-7682
결재일자	2015.3.13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★주무관	기초생활보장담당	생활보장과장	교육문화복지담당	부구청장	구청장
김지현	조민숙	代조민숙	도일환	김병환	03/13 김영배
협 조	정무보좌관	윤정배	홍보전산과장	권용대	
	복지정책과장	민지선	규제개혁담당	김용환	
	행정지원과장	이준기	인사담당	윤이남	
	자치행정과장	박성도	통합조사관리담당	代최종남	
			통합조사관리2담당	이주안	
			자활주거담당	이상월	

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준비 종합계획



교육문화복지국
생활보장과

|| 목 차 ||

I.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	1
II.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개요	2
III. 성북구 현황	3
IV. 세부추진 계획	6
1. 성북구 맞춤형복지급여 T/F 구성 · 운영	6
2. 제도준비 과제별 실행 계획	7
3. 제도 홍보 및 대상자 발굴	9
4. 향후 일정	10
V. 행정사항	10

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준비 종합계획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('14.12. 9)에 따라, 2015. 7. 1부터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『맞춤형 복지급여제도』로 전면개편 예정으로,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I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

■ 추진배경

- All or Nothing의 선정기준을 다층화, 근로를 통한 탈수급 유인
- 급여별 특성 및 상대적 빈곤관점(중위소득)을 반영하여 보장성 적정화
-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하여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

■ 기본방향

- 대상자 선정기준 다층화 : 최저생계비 → 급여별 선정기준
 - 선정기준을 중위소득*과 연동하여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, 급여수준도 인상함.
 - ※ 중위소득 :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,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
- 급여수준 현실화 : 최저생계비 → 급여별 최저보장수준
 - 급여수준이 중위소득과 연동되어 현행 최저생계비보다 빠르게 인상되며, 주거급여 지원액에 지역별 임대료 반영 등 보장성 대폭 강화
 - (※ 최근 5년 평균 인상율 : 최저생계비 4.09%, 중위소득 4.99%)
- 급여간 연계·통합 강화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지원
 - 주거·교육급여는 국토부·교육부의 관련 정책과 연계성이 강화되어 급여별 특성과 저소득계층의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 가능

II

맞춤형 복지급여제도 개요

■ 생계급여

-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는 적자 가구인 중위소득 28% 이하 대상자들에 중위소득 28% 수준('17년까지 30%로 단계적 인상)의 생계급여를 지급

■ 의료급여

- 의료비로 인한 부채 부담비율이 높은 중위소득 40%(현행 최저생계비 수준) 이하 대상자들에 게 현행 보장수준을 유지하여 의료비 부담 완화

■ 주거급여 (국토교통부)

-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이 높은 중위소득 43%이하 대상자들에게 주택개량(자가 가구) 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

구분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이상
주거급여액	110,003	187,303	242,304	297,306	352,308	407,309
기준임대료*	170,000	200,000	240,000	280,000	290,000	340,000

■ 교육급여 (교육부)

- 빈곤정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빈곤대물림을 막기 위해 중위소득 50% 이하 대상 자들에게 교육급여 지원(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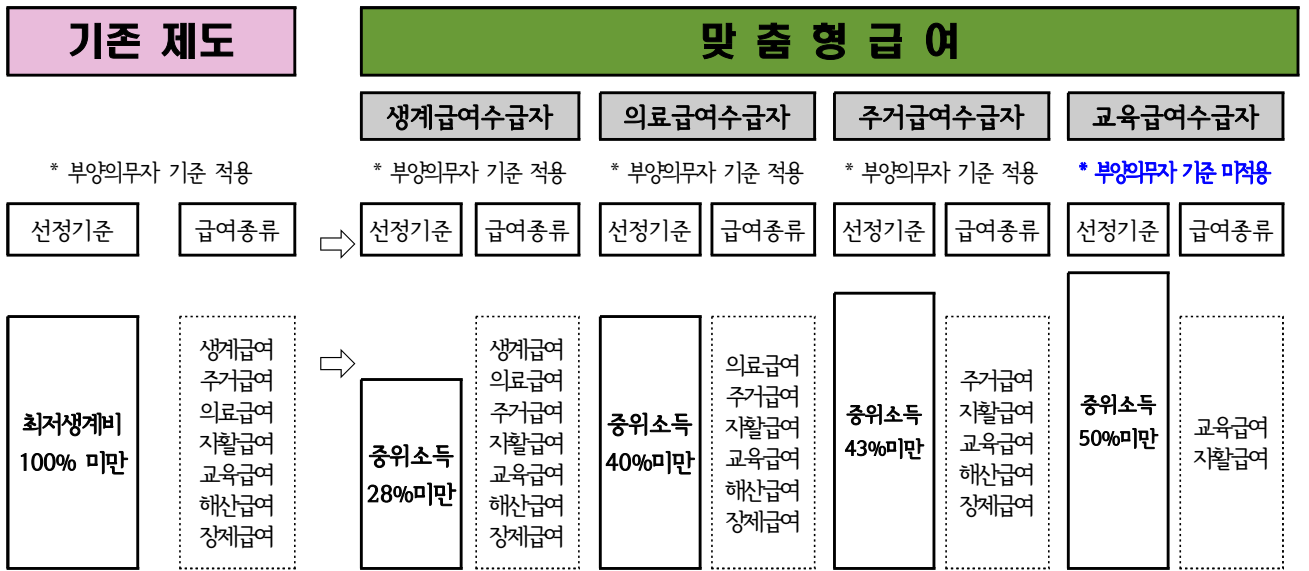
■ 맞춤형 급여 도입시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(안)

[2015년 예산기준/ 단위:원]

가구규모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기준중위소득	1,548,910	2,637,334	3,411,789	4,186,244	4,960,699	5,735,154	6,509,609
생계급여(28%)	433,695	738,454	955,301	1,172,148	1,388,996	1,605,843	1,822,691
의료급여(40%)	619,564	1,054,934	1,364,716	1,674,498	1,984,280	2,294,062	2,603,844
주거급여(43%)	666,031	1,134,054	1,467,069	1,800,085	2,133,101	2,466,116	2,799,132
교육급여(50%)	774,455	1,318,667	1,705,895	2,093,122	2,480,350	2,867,577	3,254,805

※ 참조 : '15년 맞춤형급여 운영시 4인가구 생계급여 최고액은 1,172,148원 이며, '14년 4인가구 생계 급여 최고금액 1,028,463원 보다 **143,685원이 인상 (14% 인상 효과)**

※ 기준중위소득은 '15. 3월말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



부양의무자 기준완화

- 소득기준 완화

구분	현행 (4인기준)	개편(안)
부양능력 있음 판정기준	290만원 이상	487만원 이상
부양비 부과기준	212만원 이상	419만원 이상
부양능력 없음 판정기준	212만원 미만	419만원 미만

-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-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추가로 기준 완화

맞춤형 복지급여 개편에 따른 기대효과

- (수급자수) '15.1월 현재에 비하여 약 4천가구 증가(7,057가구→11,079가구)예상
- 급여별 특성 및 상대적 빈곤관점(중위소득)을 반영하여 보장성 강화

III 성북구 현황

일반현황
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

[1월말 현재]

구분	계		일반수급자		시설수급자	
	가구	명	가구	명	가구	명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	7,057	10,318	6,613	9,874	444	444

○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시행시 수급자 예상규모

[단위:건, 연]

구분	2014년		2015년		비고
	신청	선정	신청	선정	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 및 선정현황	1,452	988	5,916	4,022	4배증가 (예상)
	수급선정율 68%		맞춤형 시행시 수급신청 예상인원		

※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시행시 기존수급자의 57%이상 수급자 증가 예상
(정부 : 134만명('14.11) →210만명으로 약 76만명(57%) 증가 예상)

■ 예산현황

○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현황

[단위 : 천원]

구분 (국:시:구)	2014년 (산출내역)	2015년 (산출내역)	증감(예정)액	비고
생계급여 (60:28:12)	22,470,000 (6,098가구×307,067원×12월)	26,997,150 (7,013가구×320,800원×12월)	4,527,150	가구수 : 약15%증가 월급여 : 14,000원 증가
주거급여 (60:28:12)	6,718,780 (5,905가구×94,817원×12월)	15,755,905 (7,613가구×172,081원×12월)	9,037,125	가구수 : 약30%증가 월급여 : 77,264원 증가
교육급여 (60:28:12)	1,016,700	1,240,100	223,400	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증가
해산장제급여 (60:28:12)	133,000	153,300	20,300	생계, 주거, 의료수급권자 증가에 따른 반영
합 계	30,338,480	44,146,455	13,807,975	약 45.5% 증가

○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

[1월말 현재/ 단위: 가구,명]

구분	총계	1종 급여대상자											2종 급여대상자		
		소 계	일 반 수 급 자	국 가 유 공 자	광 주 민 주 화	행 려 환 자	새 터 민	보 장 사 설	국 내 영 양 이 동	의 사 상 자	군 이 보 대	기 타	소 계	일 반 수 급 자	군 입 대 자
세대수	7,080	5,497	5,041	266	17	-	76	-	71	4	-	22	1,583	1,583	-
인구수	11,061	7,314	6,163	437	46	11	97	444	71	4	19	22	3,747	3,677	70

○ 의료급여(특별회계) 예산현황

[단위 : 천원]

구분 (국:시)	2014년	2015년	증감(예정)액	비고
의료급여 (50:50)	517,062	563,875	46,812	약 9.05% 증가

■ 문제점 및 고려사항

-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으로 인한 통합조사팀 및 사업팀 업무 증가
 -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에 의한 신규 수급자의 보장을 위하여 15년 6월 중 “집중신청 기간”을 약 2주정도 운영 ➡ 7월 급여지급 (복지부 지침)
 - 6월 집중신청 기간동안 대부분의 수급신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아 7월중 급여지급은 일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

○ 통합조사관리 업무처리 현황

[2014년 현황/ 연]

구분	신청·관리건수	1인당 처리건수	비고
통합조사	15,739건	1,430건	
통합관리	65,700가구/80,298명	7,300가구/8,922명	

○ 연도별 통합조사관리팀 업무증가 현황

연도	정책 및 제도	비고 (* 18개분야)
2010	○ 사회복지통합조사관리 실시 ○ 장애연금시행(7월)	국민기초생활보장, 장애연금 한부모가족, 차상위장애, 차상위자활, 청소년특별지원
2012	○ 무상보육 일부시행 ○ 우선돌봄차상위 시행	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우선돌봄차상위
2013	○ 무상보육 전면 확대 ○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범정부복지연계사업 실시 (교육부 초·중·고교육비지원 및 국토부임대주택, 타법 의료급여 등) ○ 서울시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시행(7월)	서울형기초보장, 임대주택, 초·중·고교육비지원, 타법 의료급여,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, 중증암환자지원, 소아암환자지원, 장애인자립 자금대여
2014	○ 희망키움Ⅱ, ○ 기초연금시행(7월) ○ 임대주택 확대	기초연금, 희망키움Ⅱ
2015.7	○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 ○ 서울시 동마을복지센터 시범사업 20개동 전면시행	

- * 18개 분야 복지사업 수행, 민원 직접방문, 면대면 통합상담 등 업무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로 신규 인력에 대한 장기간 교육 필요, 업무지연 처리의 악순환 반복

- 최근 사회복지정책 및 제도의 급속한 확대로 20개동 복지민원업무의 통합조사관리팀으로의 역할대기 현상 발생, 유기한 복지민원 처리지연에 따른 민원 저항 등으로 담당자 스트레스 및 소진 심각

○ 정원조례 개정(2015.4월중)을 통한 통합조사관리팀 및 사업팀의 인력 보강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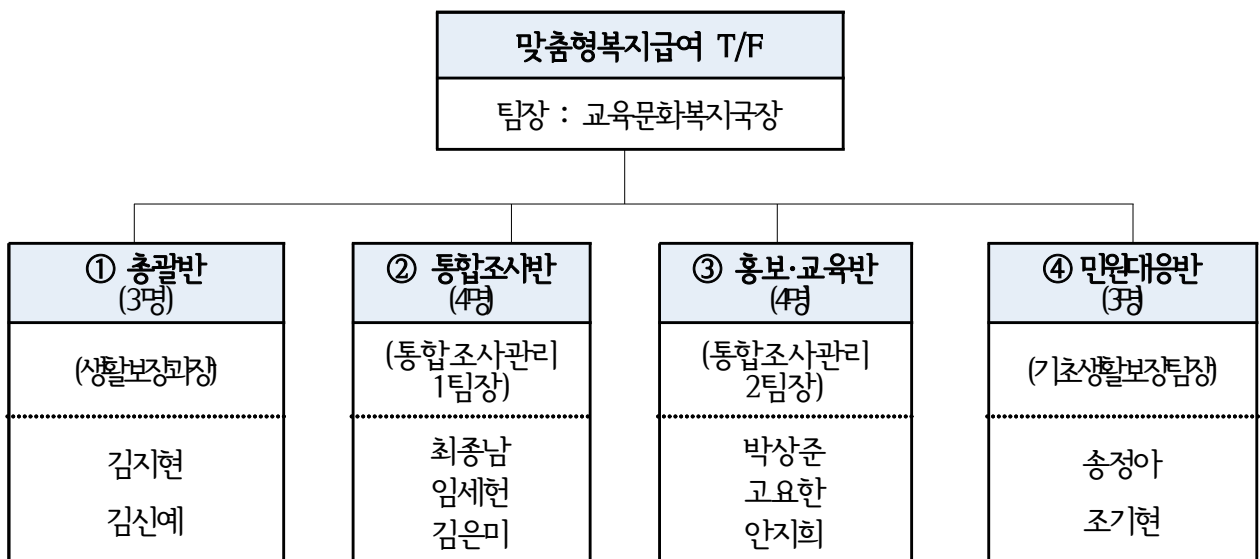
IV

세부추진계획

1 T/F구성 및 역할, 점검회의 운영, 상황관리 등

- 맞춤형 복지급여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T/F팀 구성
- 구 성 : 1팀장, 4개반 총 14명
- 운영기간 : 2015. 3. ~ 상황종료시
- 기능 및 역할 : 맞춤형급여 사전준비 조합상황 총괄, 인력 재배치, 조례정비, 여론 동향 파악 및 홍보, 주민홍보, 민원대응, 문제점 건의 등

【성북구 맞춤형복지급여 T/F 구성】



- ① 총괄반 : TF구성 및 준비계획 수립, 상황관리체계 유지, 복지공무원 재배치 및 주거급여 전담부서 등 인프라 구축, 예산확보, 조례정비, 기타 제도시행 준비사항 점검 등의 총괄업무
- ② 통합조사반 : 법령, 지침관련 총괄, 수급자 전환계획, 전산시스템 운영 및 자료정비, 수급대상자 발굴 및 자원관리 등
- ③ 홍보·교육반 : 여론동향 파악 및 홍보계획 수립, 읍면동 담당자 교육 등
- ④ 민원대응반 : 각종 민원대응, 사건사례 전파 및 보고, 현장점검 등

2 제도시행 준비 과제별 실행 계획

■ 제도시행 대비 복지공무원 적정 배치

○ 통합조사관리 인력 확충 및 재배치 근거

-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계획 (안정행정부, '13.11.29.)
-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배치안내 (보건복지부, '13.12.09.)
-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시행 준비사항 안내 (보건복지부, '15.02.23.)

○ 통합조사 관리부서 정원현황

구분	'13. 12월말			'14.7	'15.1월			증감			비 고
	계	복지직	행정직 등		계	복지직	행정직 등	계	복지직	행정직 등	
성북구	18	12	6	7	23 (2)	21 (1)	2 (1)	5 (2)	7 (1)	-2 (1)	()은 시간제 공무원

- 2015년 1월 현재 통합조사관리 1,2팀 현원 23명중 2014년이후 신규임용 11명 (48%)이며, 그중 시간제 채용인력 2명(주 20시간 근무자)
- 2015년 7월 전동 확대 시행예정인 동마을복지센터 시범사업의 “찾아가는 복지” 및 “사각지대발굴”과 맞물려 공적복지 신청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어, 부족한 인력으로 민원처리 지연에 따른 다수민원 발생 및 신규임용직원의 조사관리 미흡으로 인한 부정수급자 증가 우려

○ 인력 총원 및 재배치 필요사유

- 복지정책 및 제도증가에 따른 통합조사관리 업무 증가
- 『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배치방법』에 따라 통합조사관리팀의 정원 조정 필요

○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통합조사관리팀 미확충 인력 현황

[단위:명]

구분	2013. 12 (기준)	맞춤형대비 복지부 추가배치	2015.1 (현원)	총원 및 재배치 필요인력	비고
성북구	18	7	23 (2)	2 (2)	()은 시간제 공무원

■ 인력총원 및 재배치 방안 (요청안)

○ 통합조사관리팀 사회복지 인력 수시변경 지양

- 통합조사관리 업무의 전문성, 연속성을 간과하고 사회복지공무원 휴직발생 및 각종 복지 관련 시범사업 운영 등 복지인력 필요시 수시로 인력변경 지양

○ 사회복지 유경험 인력확충 및 신규직원의 축소

- 현재 신규임용직원 비율이 48%인점을 감안하여, 경력직 직원으로 인력확충 필요

○ 시간제 직원 배치 지양

- 통합조사관리 업무는 복지민원의 가구특성을 조사하고 관리해야하는 연속적인 업무로 지속적인 민원응대 및 관리가 곤란

■ 주거급여 전담부서 설치 : 『자활주거팀』 신설

○ 설치현황

- 설 치 일 : 2015. 1. 1
- 근무인원 현황

[단위: 명]

구분	합계	6급		7급		8급		9급		비고
		정원	현원	정원	현원	정원	현원	정원	현원	
합계	4	1	1	3	2	-	-	1	1	
행정직	2	1	1	1	1	-	-	-	-	주거급여, 임대주택, 집수리, 바우처 자활업무 등
사회직	2			1	1	-	-	1	1	

■ 집중신청기간 민간보조인력 활용

- 채용인원 : 총 20명 (각 동별 1명 배치)
- 채용시기 및 채용기간 : 2015. 5월까지 보조인력 채용 및 교육후 배치
- 담당업무 :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홍보 및 초기상담, 신청·접수 등 업무지원
 - ※ 복지부 세부추진 지침 시달후 민간보조인력 채용계획 별도 수립 시행

■ 기초생활보장법 인용 자치법규 등 정비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맞춤형급여 개편에 따른 조례 등 정비
 - “수급(권)자”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·규칙
 - 기초수급자 자격이 없어지고,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수급자로 재편되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의 경우 상기 4개의 수급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개정
 - “최저생계비”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·규칙
 - 최저생계비 대신 “기준중위소득”으로 개정
 - 최저생계비 기준선 (100%, 120%, 150% 등)과 매칭한 기준 중위소득을 참고 (4월 복지부 발표)하여 개정
 - 그 외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자체 사업이나 자치법규 검토하여 정비필요
 - 성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인, 단체 등의 기관에도 안내

3 제도 홍보 및 대상자 발굴

■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적극적 홍보

- 홍보책자 배포 (복지부 리플렛 및 브로셔 활용 및 현수막 제작)
- 성북소리 등 반상회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 대한 홍보 강화
- 시범사업 시행중인 동 복지플래너를 통해 대상자 발굴 및 면대면 홍보
- 각종 회의자료 게재 (통반장 회의, 직능단체, 주민자치위원회 등)

■ 대상자 및 이해관계자별 맞춤형 홍보

- 신규수급가능자 : 기초생활수급 보장제외자, 다른 민간자원 연계지원자 등 제도시행으로 수급이 가능해진 자에 대해 중점 홍보 실시
- 기존수급자 : 제도개편에 따른 기존 수급자들의 불안해소를 위한 면대면 홍보실시
- 일반주민 : 지역신문, 성북소리 등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알리는 등 제도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실시

4 향후일정

- 2015. 4 :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관련 직원 재배치 (지침교육 이전 재배치 필요)
- 2015. 4 :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지침 교육 (주민센터, 통합조사관리팀 등 담당자)
- 2015. 5 : 맞춤형 복지급여 업무지원 민간보조인력 채용, 교육후 동 주민센터 배치
- 2015. 6 : 맞춤형 복지급여 사전 집중신청
- 2015. 7 :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복지급여로 전면개편 시행

V 행정사항

■ 행정지원과

- 『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배치안내』 (보건복지부, '13.12.09.)
따라 통합조사관리팀 정원조정 및 시간제 공무원 2명 재배치

■ 홍보전산과

- 성북구 홈페이지, 소식지 등에 홍보 게재

■ 전부서

- 수급권자 및 최저생계비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, 규칙 등 재정비
-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인, 단체 기관 등에 안내

■ 동주민센터

-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동 전광판 게재
- 통·반장 및 직능단체 회의 등을 통한 홍보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락가구,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등 복지사각지대 중점 홍보